

1 전기안전관리

관련법	전기사업법 제66조의 2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
검사 주기	연 1회 자체점검 : 월 1회 이상
처벌	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
관련 기관	한국전기안전공사 (1588-7500) http://www.kesco.or.kr

2 가스안전관리

관련법	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,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
대상	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
검사 주기	연 1회 (가정어린이집: 10년에 1회) 자체점검 : 월 1회 이상
처벌	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관련 기관	한국가스안전공사 (1544-4500) http://www.kgs.or.kr

3 소방안전관리

관련법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, 22조, 25조, 41조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
검사 주기	연 1회 소방대피훈련 : 월 1회 이상
처벌	미점검 : 1년 이하 징역/1천만 원 이하 벌금 관리자 미선임 : 300만 원 이하 벌금
관련 기관	한국소방안전원 (1899-4819) http://www.kfsi.or.kr

4 방역관리

관련법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
검사 주기	하절기(4~9월) : 2개월에 1회 이상 동절기(10~3월) : 3개월에 1회 이상
처벌	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관련 기관	각 지역 방역업체

5 실내공기질관리

관련법	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면적 430㎡ 이상 어린이집 (가정어린이집 제외)
검사 주기	유지기준 : 연 1회 이상 권고기준 : 2년에 1회 이상
처벌	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관련 기관	경기도환경보전협회 (070-5222-2122) http://www.ggepa.or.kr

6 석면관리

관련법	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29조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
검사 주기	2019.11.28.까지 별지 제25호사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
관련 기관	한국환경공단 (http://www.keco.or.kr) 석면관리종합정보망 (1661-4072) https://asbestos.me.go.kr

7 승강기안전관리

관련법	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
대상	승강기 관리주체
검사 주기	정기검사 : 2년에 1회 이상 수시검사 : 변경, 교체, 수리 등 자체점검 : 월 1회 이상
처벌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
관련 기관	한국승강기안전공단 (1566-1277) http://www.koelsa.or.kr

8 CCTV관리

관련법	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 3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
설치 기준	60일 이상 저장 HD급 이상 화질
처벌	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관련 기관	시군구 보육담당부서 복지부 콜센터(129), 각 지역 보안업체 등

9 통학차량관리

관련법	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 2 도로교통법 제52조
대상	어린이 통학버스
신고	관할경찰서에 신고 신고증명서 차량 내 소지
처벌	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관련 기관	도로교통공단 (http://www.koroad.or.kr) 학교안전공제중앙회어린이통학차량사이트

10 놀이시설관리

관련법	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, 15조
대상	어린이 놀이시설
검사 주기	정기검사 : 2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 : 월 1회 이상
처벌	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관련 기관	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http://www.cpf.go.kr

11 음용수관리

관련법	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2
대상	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관리자
관리 주기	설치신고 : 시군구청장에 신고 에어필터 : 년 1회 이상 교환 청소소독 : 6개월에 1회 이상
처벌	1차 위반 : 50만 원 2차 위반 : 70만 원 3차 위반 : 100만 원
관련 기관	시군구청

12 금연구역지정

관련법	국민건강증진법 제9조
대상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통학차량
설치 기준	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이내 구역의 건물담장, 벽면, 보도 및 통학차량에 '금연' 표시 설치/ 부착
처벌	금연구역 미 운영 시 500만 원 1만의 과태료 (1차 '금연' 표시 미 부착 시 시정명령 2차 명령불응 시 과태료 부과)
관련 기관	시군구 보건소 금연상담전화 (1544-9030)